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00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이광희 · 이주희 · 박지혜
박해철 · 김 윤 · 장종태
송재봉 · 임미애 · 이재강
박정현 · 김문수 · 김우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맡겨 수임·수탁기관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행정기관은 수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고 수임·수탁기관은 그 지휘·감독에 따라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수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6절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행정기관(법령등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임·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행정기관은 수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할 책임을 진다.

② 행정기관은 수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면서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임·수탁기관은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등을 준수하고, 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u> <u>행정기관(법령등에 따라 행정</u> <u>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u> <u>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령</u> <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u> <u>한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u> <u>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 또</u> <u>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권</u> <u>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u> <u>(이하 이 조에서 “수임·수탁</u> <u>기관”이라 한다)는 그 사무의</u> <u>처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권한</u> <u>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행정기</u> <u>관은 수임·수탁기관을 지휘·</u> <u>감독할 책임을 진다.</u> <u>② 행정기관은 수임·수탁기관</u> <u>의 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u> <u>면서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u> <u>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u> <u>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u> <u>이 경우 수임·수탁기관은 특</u> <u>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u> <u>야 한다.</u>

③ 수임·수탁기관은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등을 준수하고, 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